

맑은 사회를
함께 열어갈
참여연대회원을
모집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 ▶ <맑은사회 만들기>본부 및 참여연대가 개최하는 각종캠페인과 시민강좌에 참여하고, 회원간의 다양한 친목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 ▶ 참여연대 소식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참여연대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할인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의 참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회비 안내

어린이(국민학생 이하)	연 1천원 이상
학생(대학생 이상)	연 5천원 이상
일반	연 3만원 이상
기족	연 3만원 이상
단체	연 3만원(가입비)
후원회원	연 10만원 이상

회원가입문의 및 신청

(02)-797-8200
회비와 후원금은 아래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금주: 이진희
· 제일은행: 325-20-131100
· 삼성은행: 192-08-76153
· 농협: 094-02-097506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 ▶ 부정부패신고전화 - <시민의 눈> 상담을 통해 시민제보 접수를 받습니다.
- ▶ 부패방지법 제정캠페인 등 <맑은사회만들기> 각종 시민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캠페인을 함께
할 연대단체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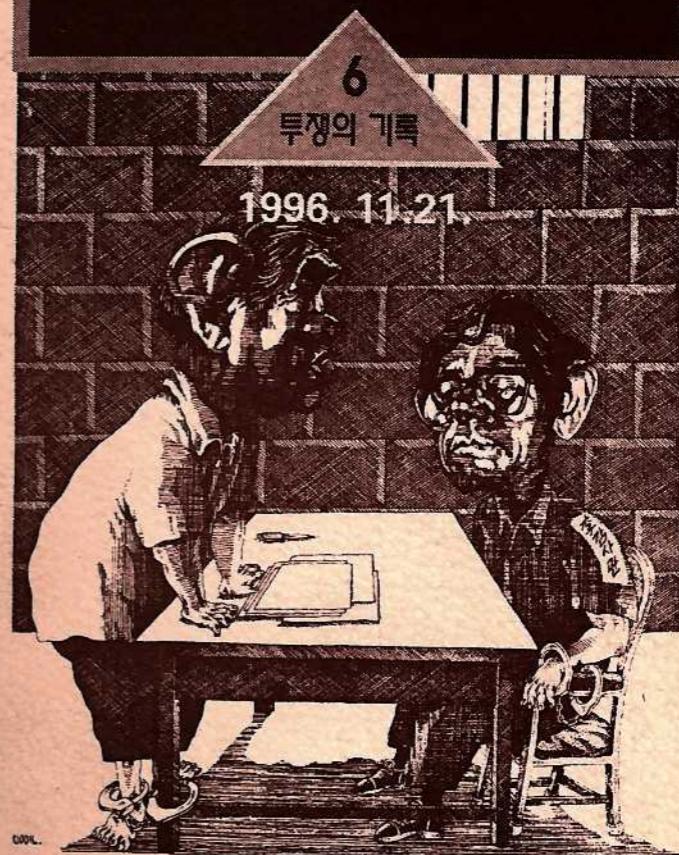
- ▶ 지역시민단체, 직업별 직능별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독립적이고 건전한 단체
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 ▶ <맑은사회만들기> 캠페인의 전부 또는 일부 캠페인에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김창국 · 전화: 797-7413 · 팩스: 797-7412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PSPD ·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797-8200)

이문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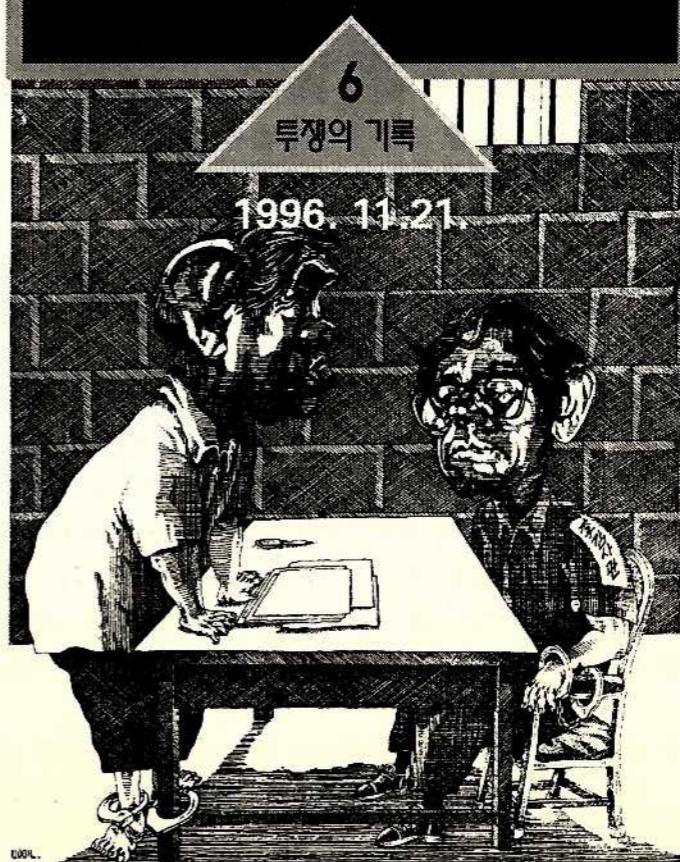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중단」 양심선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자지원단

이문옥 감사관의 의로운 투쟁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중단」 양심선언



발간사

권진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장)

이문옥 감사관은 이 시대의 권력구조의 비리를 폭로했다고하여 탄핵되어야 할 권력으로부터 거꾸로 탄압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분이다. 이 자료집은 그가 겪었던 의로운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사회가 얼만큼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언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에서 이 자료집을 내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정의가 이문옥 감사관과 같은 정의롭고 용기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나마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앞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결코 고난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서는 모든 용기있는 의인들과 손잡으려고 한다. 지금도 우리사회 각 영역과 부분에서 비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는 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에서는 이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도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내부비리고발자, 공익정보제공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이감사관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여 마지 않는 것은 이문옥 감사관의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승리로 확정되어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복직되게 됨으로써 이감사관의 의로운 투쟁이 승리의 대단원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 민주시민들의 승리요, 용기있는 양심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법원 당국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 참여연대는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사정기관이 독립되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청렴결백성을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공명정대한 공복으로서 멋떳하게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또한 개인이 사정기관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했다고 그를 폐쇄죄로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효산큰도건축허가비리에 대한 감사중단의혹을 양심선언한 현준희 주사를 이제라도 복권, 복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료집을 통해 이문옥 감사관이 승리하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그 분이 보여준 지칠 줄 모르는 용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996년 11월 25일

인사말

이문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가 한겨레 신문사와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는데, 저에 관한 자료집까지 만든다니 더욱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캠페인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를 진실로 추방하려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정부패방지기본법의 주요내용이 될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자보호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인사말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부정의 발본에 앞장설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현행법규는 공직자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7조 제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 55조와 공무원복무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는 누구나 최초 임명장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부정은 계속 심화되고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들이 부정을 저질러 수천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500개 기업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1.1%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사이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부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세력들은 부정에 관련된 돈을 마련하고 또한 한층 부풀리기 위하여 또 다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전체에 부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그늘에서 많은 국민들은 부정에 관련된 자금 이상의 많은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이 추방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이 몸소심하느라고 국민과의 약속인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까지 관련된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직자가 부정을 추방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회생만 당하고 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하여 4급내지 9급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무원 의식조가 결과>에서 답변한 공무원의 81.2%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관행이 부정한 것인줄 알지만 그것을 문제삼아 동료 또는 상하공무원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할 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 79.5%였고, “자신이 속한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무원을 따돌리려는 풍토가 있다.”는 답변이 61.9%였습니다.

공직자들이 이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자기가 소속한 부서의 부정을 시정하려는 극소수의 공직자들이 정부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91년 정경유착의 일부를 국민에게 알리어 시정하려다가 구속됨과 동시에 파면당하였으며, 한준수 전 연기군기군수가 국회의원선거의 관권개입부정을 국민에게 알려 시정하려다가 구속됨과 동시에 파면되었고, 윤석양 전 이병이 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시정하려다가 역시 구속기소되어 2년 징역형을 받는 등 공직부정을 고발한 공직자는 한결같이 회생만 당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정을 고발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은 그 행위자외에 옆에서 지켜보는 상하급자와 동료 또는 감독직에 있는 공직자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직사회의 부정을 발본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입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부정을 없애고자 노력하다가 회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보호규정을 포함한 부정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법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공직사회의 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부정을 근절시키는 무기가 되게 하고, 부정을 저지른 공직자는 동료나 상하공직자가 그대로 묵과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부정을 예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6. 11. 25.

● 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애써주신 자원활동가

김미라, 안형준, 이공법, 주계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문옥 약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보통고시 합격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1년 수학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세무전공)1년 수료
- 감사원 감사관
- 90. 5. 양심선언으로 징계파면.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 및 고등법원 파면 취소 판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부정고발센타 대표
-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관권개입 감시위원장
- 「나라사랑 양심선언자 모임」 회장
- 「12·12 군사 반란자 기소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
- 「5·18학살자 처벌 및 특별법 제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
- 불교바로세우기 위한 재가불자연합 공동대표
- 전국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자문위원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100만인시민감시단장 겸 부정부패 고발센타」 소장
- 민주당 노원(을)지구당 위원장
- 96년 11월 감사원 복직

승소에 이르기까지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19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땅의 보유 실태를 폭로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원의 독립을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하였다. 그는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이 43 퍼센트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90년 5월 감사원 서기관으로 재직시

-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자료 폭로」
- 90년 5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 90년 5월 16일 검찰 구속
- 90년 6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보석결정
- 90년 12월 27일 감사원 중앙징계위 파면의결
- 91년 7월 31일 이문옥 서울고등법원에 파면처분청구 소송
- 93년 9월 6일 서울지방법원 무죄판결
- 93년 9월 14일 검찰, 서울지법공판부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
- 94년 4월 27일 서울고법 파면처분취소 판결
- 95년 2월 21일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무죄 판결
- 96년 4월 10일 대법원 형사2부 무죄확정 판결
- 96년 5월 11일 대법원 파면처분청구 소송 승소판결
- 96년 11월 4일 감사원 복직



위 은 순 서

제 1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쪽로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파문

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8
2. 양심선언과 연행	17
3. 언론 및 각 단체 반응	31
4. 이문옥 감사관 구속적부심 관련내용	41
5. 폭로내용 조사 및 확인	53
6. 검찰 수사결과 발표	73
7. 이문옥 감사관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81
8. 감사원 반응	89
9. 보석 관련내용	97
9-1. 구속 후 1차 공판 관련내용	106
10. 이문옥 감사관 수상 관련내용	111
11. 소송 관련 내용	117
12.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복직	150

2부. 이문옥의 사회활동

1. 사회단체활동	154
2. 92년/95년 국회의원 선거출마	179
3.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 노력	205
4. 사회활동 주요자료	223

제 3부. 인간 이문옥

1. 인간 이문옥(각종 인터뷰)	258
2. 자필 서신과 가족의 인터뷰	267
3. 격려편지 모음	277

제 4부. 양심선언 후 법정관련 자료

1. 구속과 석방/무죄판결	288
2. 파면과 파면취소	313
참여연대 부정부패추방캠페인 소개	354

제1부.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파문

1.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2. 양심선언과 연행(90.5.11)	
증언내용/감사원 감사일보/양심선언관련 기사	
3. 언론 및 각 단체 반응(90.5.11-6.3)	
경실련 성명서/사설/관련기관·단체 입장 및 성명	
4. 이문옥 감사관 구속적부심 관련내용	
구속적부심 관련기사/이문옥 감사관 진술 내용/구속적부심 기각 기사	
5. 폭로 내용 조사 및 확인	
검찰 조사/사설/폭로 내용 사실 확인	
사회단체, 언론, 야당의 반응	
6. 검찰 수사결과 발표	
수사결과 발표 내용/수사결과 발표 안팎	
7. 이문옥 감사관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90.5.17-20)	
사회단체, 야당 석방촉구대회 관련 기사	
8. 감사원 반응	
이문옥 감사관 폭로내용에 대한 감사원 해명/여론 동향	
9. 보석 관련 내용	
보석청구 관련기사/사설/석방	
9-1 구속 후 1차 공판 관련 내용	
10. 이문옥 감사관 수상 관련 내용	
11. 소송 관련 내용	
12. 이문옥 감사관 감사원 복직	

기업 비업무용 땅 강제매각

투기 통치차원서 근절 연내 정치·사회 안정 이룩

노대통령 특별담화

노태우 대통령은 7일 시국관련 특별담화를 발표, "대기업과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이나 과다한 부동산은 강제매각을 해서라도 처분하겠다"면서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쟁기는 풍조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해설 3면)*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념 관계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처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시국담화문에서 "이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내고 정착될 때까지 앞장서 독려하고 필요

한 조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유있는 계층은 과

도한 소비와 사치를 자제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책임을 져달라"면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스스로 처분하고 노사와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땀흘려 일해 얻은 소득과 이윤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당통합과 관련, "체질이 다른 정치세력을 통합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면서 "민자당이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의 불신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한겨레 90. 5. 8

‘파토기’ 억지 투불(투불) 추진

비업무용·친인척 위장 차별근거 마련

정부·민자 이달말 임시구회서 처리

정부와 민당은 7월 오후 이승운 부총리와 김용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책의장을 갖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작된 허위 미신과 같은 정보가 확산되자 당정책위는 타인 명의에 대한 체제를 대체하는 향후 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5월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은 승인되었지만, 법적 근거 스트리밍 및 토지의 처분 및 신규토지의 취득청지에 관한 규정 등 투기단속법의 일부 조항은 평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토지 조합 등으로 표기되었다.

토대로 일정부분 이상의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특별관리대상기업과 임직원으로 토지매각은 정부가 그 체득여부를 허가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정받았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이후 모든 토지취득을 허가를 강화해온 토지를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확장해온 토지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적 토기정책을 위해 국무총리로 부동산투기억제위원회 직속으로 제 정체의 시행을 위해 매각방식은△금융기관의 경우 저선은행지침에 따라 파다보유로 토지를 매각유도하고△비업무용 또는 투기성격의 토지는 자진처분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성업구시에서 공예토록 하고 공매가 오를 때는 공공기관에서 취득할 의 기준으로 수용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 세금으로 편성받은 차액 대체로 세금 부과시 과표율 1‰%로 신체(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49개 그룹 땅매입 不許

내년 6월까지 生產用은 제외 저

非업무용 6개월內 매각
금융기관땅 석달안 처분
사치성 건축은 許可제한

부록 어트 밸리 대체 반 슬즈

제3者명이不動產 담보로 인

중앙. 90. 5. 8

노대통령 시국담화 뭘 담았나

대통령의 7월 담화는 말로만 끌나는 첫된 약속이 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기 위해 솔직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찾을수 있다. 대통령은 이를 '시국과 관련'이라는 말씀'이라 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증요법 치중...‘불신’

“안정 정착때까지 독려” 이례적 의지 표명

대통령은 수습책으로 스기 비업무용 및 파다보유 부동산 강제매각 △각종 부동산에 대한 철별 △불법 노무의 강력한 제재 등을 제시 했다. “대통령은 이날 ‘단호한 대처방안’에 대한 용어를 강조한 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수습책으로 체시한 대로 실현을 희망한다. 대로 실현되는 것이 중 각 해서라도 차분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중에는 과연 정부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외국 순방 일정을 축소할 정도로 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담회내용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의지표 명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밝힌 대처방안은 국민에게 원난을 타개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희망하거나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 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기업인,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단협, 경총 등 경제단체장들은 8일 오전 서울

각 부문에 대한 협력한 실 호소는 오히려 청부의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적도 있다. 특히 현재의 위기가 사실과는 달리 심리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과도한 욕구분출이나 준법정신의 결여 등을 지적한 대목은 정부의 책임과 정체·사회의 안정을 이루려 한 테서 비록 본래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증요법 치중...‘근절책’ 없어

표명

이밖에 “이미 공포된 토지공개 법 관계법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 토록 하겠다”고 한 것도 이들이 이미 투기억제에 별 효과가 없음이 판명된 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보다는 오히려 금융설명제 등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계는 이날 담화는 또 정치·경제·사회를 통해 행정조처만으로는 조처가 보다 분명대로 추진하는 조치라는 지적 이 높다. 이날 담화는 정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다. <윤국환 기자>

한겨레 90. 5. 8

회의 보다 뉘은 민주화 압속이나 정의구현을 위한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없이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강렬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KBS 나 현대중공업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정치투쟁으로 규제해온 정부의 자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각종 분규를 사용자와의 관점에서 판단해 정당한 근로자 권리장조차 억누를 소지가 있다. 현 시점에서 난국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리가 높다. 현 시점에서 벌써부터 정부의 각종 정책에 국민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체 도덕성을 의심 관성을 결여한 채 도덕성을 의심 받으면서 가진 자만을 응호한다는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노 대통령의 담화가 아무리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더라도 이를 넘화 및 그에 따른 구제 척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체대로 실행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 등 현제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정부로서는 큰 위기에 직면 할 것이다. <윤국환 기자>

재계 ‘강제 매각’ 반발 조짐

“법근거 없이 행정조처만으로 곤란”

경제단체장 회동...정부대응 주목

재계는 8일 정부의 대기업과

부동산 매각을 여신관리규정 등

행정력에만 의존할 경우 오해와

불만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

고 지적, “3개월 이전에 임시국회라도 열어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뒤 집행해 달라”고

정부에 모임에서 회장단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에 근

로자 주택 등 복지시설을 건설로

록 해 줄 것도 전의키로 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내용이 10일 전경련 회원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기업과 결의대회의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벌기업의 한 간부도 “지금

상태라면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만들어 팔아야 할 형편”이라며 “과연 정부

가 정당하게 사들인 땅을 팔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

럽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보완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기업,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업이 부동산을

통한 이윤추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 전전한 생산투자에 전념

한겨레 90. 5. 9

49개 財閥 부동산 買入 금지

대년 6월까지 … 生産用地만 예외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정부제2종합청사에서 李承潤부총리를 비롯, 재무·상공·건설·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金振平기자>

90년
조선 5·9

非업무 6개월내 매각

이달총 三星등 5개 그룹 실태조사

하하하

드득이야

게섯거라

진짜
도둑마
았는지
자비는
조사해
않겠다

2. 양심선언과 연행

#증언내용

#감사원 감사일보

#양신선언관련 기사

지벌 땅 감사내용 공개 감사원 이론과 구속

본지에 사본제공 기밀누설 혐의 검찰 “정부 공신력에 손상”

1990. 05. 16

감사원 감사관이 자신이 조사한 청탁기입의 비밀누용·부동산 감사내용을 언론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민련2기 11면)
감찰의 감사관에 대한 구속은 이론과 비밀누설죄의 적용범위, 부동산 비밀누용·부동산 등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우 감사원)는 15일 감사원 감사관 이운영(50)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감사의 명령을 받고 하원께 바른 23개 청탁기입의 비밀누용·부동산 카드에 관한 과세실태 감사만 한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던 5월 14일 뒤 감사승단 서장을 맡은 보도기자에게 감사보고서를 도태로 전해졌다. 차장, 시는 1부를 이어 청탁기입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이씨가 보완한 보고서 사용에는 청탁기입의 비밀누용·부동산 비밀유이 43.3%에 달해 온라인 판권이 떨어져 1.2%로 떨어졌다. 내용이 달라 있었습니다.



15일 밤 청탁기입 감사내용을 본사에 공개,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집행되고 있는 이운영 감사관. (연합뉴스)

양화시적 이씨가 구속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휴기를 끝내고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김사원(36)씨가 출근했을 때 김사원(36)씨를 공개됨으로 조사내용 체계기준을 이어오면서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을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례신문>에 자신과 감사보고서를 제보한 당시 14일 만에 감사가 중단된 것은 개인의 로비를 받은 고위층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씨는 경찰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형하게 진술하고, 감사활동이 일부 압박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사중단 사실과 관련,

“이씨는 주의를 밟고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도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하고 “감사원 감사자를 불러 이씨의 주장대로 감사가 외부적용으로 중단됐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치형처벌에 처하도록 규정

짧은 기간에 조사한 부실한 내용이고 23개 기업의 비밀누용·부동산 구별기준이 은행감독원이 5배 차이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내용 20개 기업으로써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을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례신문>에 자신과 감사보고서를 제보한 당시 14일 만에 감사가 중단된 것은 개인의 로비를 받은 고위층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씨는 경찰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형하게 진술하고, 감사활동이 일부 압박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사중단 사실과 관련, “이씨는 주의를 밟고 그때까지의 감사결과를 도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하고 “감사원 감사자를 불러 이씨의 주장대로 감사가 외부적용으로 중단됐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치형처벌에 처하도록 규정

되며, 1990년 5월 16일에 청탁기입 감사내용을 공개,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집행되고 있는 이운영 감사관. (연합뉴스)

90년 5월 16일

자료 출처: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이운영 감사관”

19년 외길 감사관의 선택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李文玉씨

鄭基修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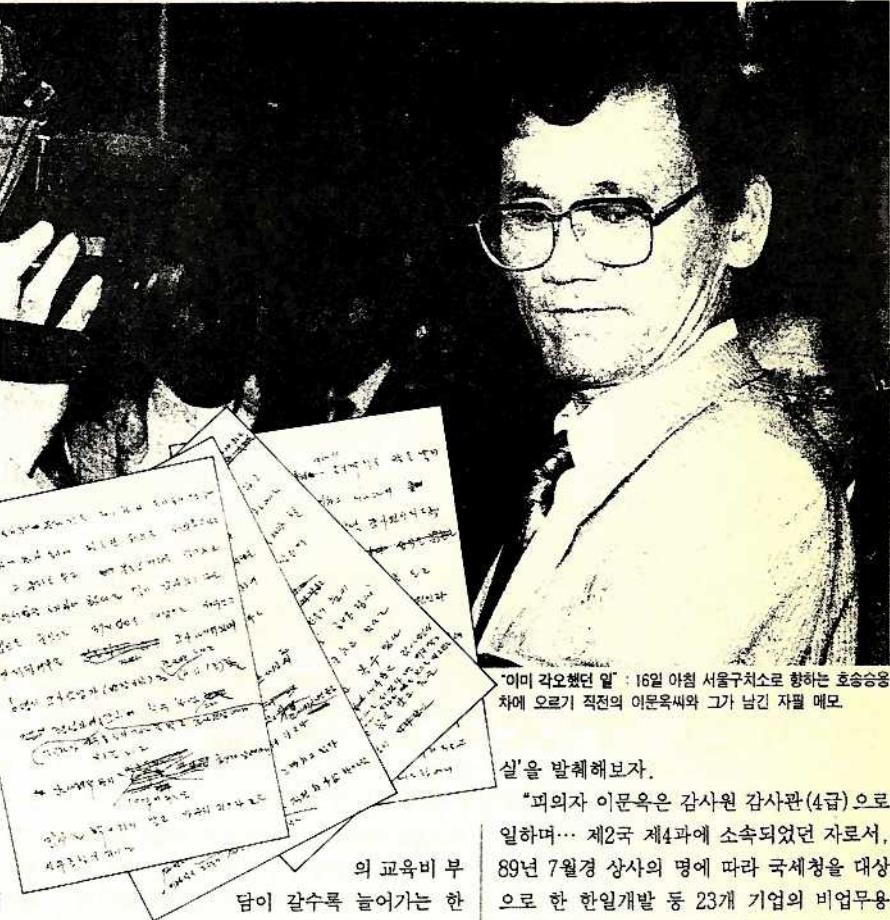
전 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지난 2월 말경, 〈한겨레 신문〉 편집국에는 한통의 심상치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제보자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5월11일,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1면 톱을 시커멓게 장식하며 바로 그 제보내용을 보도했다. “23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업계로비에 밀려 감사중단.” 다음 날 역시 1면톱으로 이어진 보도는 독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43% 추정-감사원 보고서, 은행각동위 1·2%와 큰 차.”

제보자는 첫 보도가 나간 지 3일 후
인 5월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
행돼 철야조사를 받은 뒤 바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혐의는 형법 제
127조의 '직무상 비밀누설죄'. 직무상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물론 퇴직후에도 누
서는 안된다는 공무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구속이유였다.

한국언론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하니 이번 사건의 주인공, 문제의 제보자는 감사원 교육실 교수담당관 李文玉씨. 그는 지난해 8월 감사원 2국4과에서 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28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끝내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올해 나이 50세, 부인(46)과 고등학교 2학년인 딸(17), 중학교 3학년인 아들(15)이 있다.

주씨의 구속을 보면서 품계 되는 세간의 궁금증은 대강 이런 것들이다.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이 오십에, 너구나 자녀들



▶ “이미 각오했던 일” : 16일 아침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승승용 차에 오르기 직전의 이문옥씨와 그가 남긴 자필 메모.

실'을 발췌해보자.

"피의자 이문옥은 감사원 감사관(4급)으로 일하며… 제2국 제4파에 소속되었던 자로서, 89년 7월경 상사의 명에 따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실태감사반의 반장으로서 … 8월16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다가, 과잉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9월초경 그때까지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 사본 1부를 보관중 12월
29일 감사교육실 교수담당관실로 전보되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
산 소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을 계기로… 5
월5일 11시경 강남구 소재… 뉴욕다방에서
〈한겨레신문〉…에게 …사본1부를 전네주어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로서
구속치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는 자임”

파임감사로 물의를 빚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사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 이 이씨에 대한 한 검찰의 수사결과이다. 이씨는 그러나 인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할

機密監察院서기관구속

大檢
비업무용 不動產 자료 言論에 유출

조선 90.5.16

법으로 감추고 있는 비리 등의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란 광고를 말리는 작업과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원내에서는 실적 부담이 없는 내근부서를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장의 감사반원들이 "커피나 파일 대접조차 물리치고 물만 마신다"는 것은 광간사기관에서 비교적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다.

따라서 인사보다는 그의 성격이나 평소의 소신에서 이번 일이 비롯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이씨 주

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광주고 7회인 그의 한 동창생은 "문육이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가난이고 또 하나는 전라도 말로 강강(깐깐)"이라는 것이다. 동료들에 따르면 그의 깐깐함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소문난 것이라고 한다.

"감사원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이문육씨의 고향은 전남 나주 왕곡, 가난한 농사군의 집 장남이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보통고시에 합격했다. 62년 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71년 이후부터는 줄곧 19년 동안 '감사원 사람'으로 불박이돼왔



타고난 감사관 : 지난 78년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는 이문육씨.

쌓여 있었으며 《장길산》 《월간 다리》 같은 책들도 눈에 띠었다. 직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쓰고난 전산용지 뒷면을 회계학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부인의 말로는 이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몇 번이나 도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그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는 공인회계사, 토지평가사 등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이 많다.

이문육씨가 평소 책읽기, 특히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고졸출신임에도 승진시험 등을 통해 동기생에 비해 진급이 늦지 않았으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야간대학을 거쳐 최근에는 특수대학원까지 마친 점이 그런 것이다. 지난 78년에는 돌아가면서 받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씨의 모든 노력은 감사원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데 부인은 그것을 "감사원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청내에서 감사원 동료들을 만나 이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음을 건네면 그들

그 지위와 임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감사원 기구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金永駿)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무처로 2원화되어 있다.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원장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감사위원들로 짜여진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의 결기구로서 감사원을 대표하지만 감사업무에 대한 실무는 사무처에서 맡고 있다. 사무처는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 밖에 이론바 감사활동부서인 제5개국 및 기술국과 기타 지원부서로 구성된다. 각국은 대개 5개과로 구성되는데 주요감사대상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1국 1과에서는 경제기획원, 2과는 재무부 및 산하 국영기업체와 국책은행, 3과는 동자부 및 산하 단체, 4과는 상공부 특허청 공진청 등, 5과는 체신부 및 통신공사 등을 맡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2·3·4국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서부터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각시도군)에 이르기까지를 관찰하고 있다. 한편 제5국은 주로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이론바 기동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데 최근에 대통령비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이론바 특명사정반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들도 5국 소속이다. 말하자면 과거 감찰위원회의

그리다가 감사원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가진 감사기관이 설치된 것은 5·16 무대타 이후, 군사정부는 실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그만한 권한이 커진 감사기구를 발족시켰다. 제3공화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감사원의 당시 주요임무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이었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친 헌법 및 감사원법 개정으로 감사원 기구 개편은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감사원, 무엇하는 곳인가

행정기관 회계검사와 공무원 직무감찰이 주임무

감 사원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일까? 감사원의 재벌기업 비업무용 토지 보유 현황 실태 조사보고서를 신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현직 감사관이 전격 구속됨에 따라 새삼 '감사원이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관심이란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뿐 아니라 '도대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본질적 물음을 담고 있다.

감사원 사람들은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을 두고 말할 때 꼬꼼 조선시대의 사헌부를 입에 올리지만 오늘날에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간 조직이 그 주요임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맞는 표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기구는 정부수립과 함께 48년 7월 17일 설치된審計院과 監察委員會라는 두 기구이다. 당시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의 검토와 정부 각기관 및 그 기관들의 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검사, 감사원 기구 개편은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재벌로비에 분노' : 부동산 매각 결의를 발표하기 위해 자리에 걸이한 재벌총수들과 이들의 로비사실을 폭로한 5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당시 2국장은 국방대학원에 입교하게 됐으며 4과장은 자료담당관으로 뵙게 됐다. 올해 초 퇴직, 현재는 모 단체의 전무로 있다. 감사원 측은 이들에 대한 인사가 과잉감사로 주의받은 사실이 일부 반영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安景相씨는 올해 초 감사원을 떠났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씨가 제보하게 된 결정적 동기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씨의 부인에 따르면 그는 교육실로 발령난 뒤 "힘이 없어 밀려났다"라고 말하는 등 '좌천'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였고 큰 고민에 빠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민은 인사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한다. 그것은 "남을 가르치는 재미가 잘 편찮은 것"이었지만, 우리 아들도 교수를 시켜야겠어"라며 전보된 교수담당관의 일에 대해 자주 만족을 나타낸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감사 당시 재벌의 로비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간도 원래 예정이었던 14일을 다 채워 중단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감사에 대한 보고서가 완결 처리되지 않고 향후 감사를 위한 '자료화'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완결처리를 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급자의 판단에 속하는 일"이라고만 언급,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다.

이씨와 함께 상급자들도 인사조치됐는데

은 대개 “말이 없고 강직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해두자.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말꼬리를 감춘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남이 안보는 곳에서 이씨 집으로 격려전화를 해준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격려전화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일을 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낸 용기가 존경스럽다” 등이라고 이씨의 부인은 전했다.

이문옥씨는 자신의 글에서 밝혔듯 이 “감사원이 아래선 안되겠다”는 마음, 감사원의 파행적 운영을 자기 한 몸을 던져서라도 타아보겠다는 충정에서 이번 제보를 감행한 것으로 동창생들은 믿고 있다. “그것을 더욱 축발시켰던 것은 아마도 재벌의 로비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된 일이었던 것 같다”고 그를 최근에 만난 한 친구는 밝히고 있다.

보도된 다음날 스스로 제보사실 밝혀

이씨는 최근 이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추악한 재벌의 힘에 의해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 어야 할 기관조차 아무런 저항 없이 주저앉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이 애



공부하는 공무원 : 책상으로 쓰고 있는 부인의 경대옆에는 전문서적이 쌓여 있다.

그때마다 이씨는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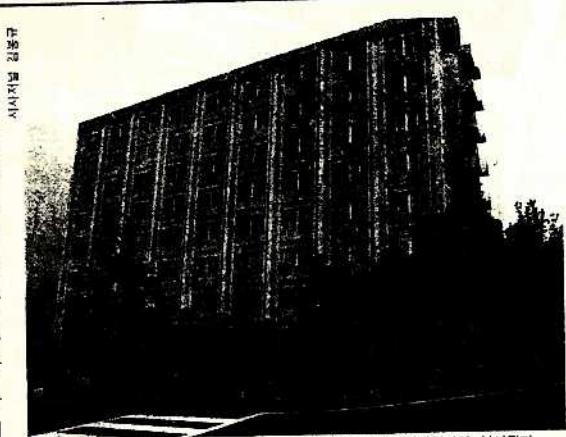
‘운명’의 기사가 보도된 5월 11일부터 이씨는 휴가원을 내고 마음을 정리했다. 일요일인 13일, 가족들에게 ‘통보’할 시간이 되자 마침 입원한 친척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부인에게 전화로 “시골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나라와 감사원을 위해 한 일이다… 충격받지 말고 엄마 잘 위로하도록 해라. 절대 기죽지 말고…”

다음날 출근한 이문옥씨는 감사원 보고서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며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보의 이유”라고 동료와 상급자에게 스스로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 청내 감찰실로 이씨는 소환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검 중수부로 연행돼 ‘기밀’을 누설한 죄과에 대해 밤새워 조사를 받았다.

16일 아침 그는 두 손을 쇠고랑에 넣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승용차에 오르기 전, 사진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초췌했으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

기능을 5국에서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고 회계검사는 다시 필요적 검사와 선택적 검사로 나뉘지만 주업무는 필요적 검사이다. 지난 한해 동안의 감사대상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기타 단체)은 모두 4만9천개쯤 되었는데 이중 필요적 감사대상기관은 3만 3천3백개쯤이었고 감사대상인원은 모두 1백만명이 넘는 수효였다. 한편 감사원 직원은 현재 7백50명쯤이나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고용직을 뺀 실제 감사활동을 벌이는 일반직은 5백60명 쯤이다.

이들 일반직 공무원들은 각국·파에 속하면서 감사정보수집, 실지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실지감사 과정·현장감사기간은 14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증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그 기간중의 감사증단은 있을 수 없고 이감사관의 보고서를 상급자가 차기 ‘감사자료’로 삼으라고 한 것을 두고 ‘감사증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전경 : 이곳에서 4만9천여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의 회계검사가 실시된다.

편 이문옥감사관은 “10일만에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실지감사를 마친 감사반원들은 감사과정과 그 결과를 ‘歸廳報告書’로 작성, 감사반장이 과장·국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사무차장·총장에게까지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과장·국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불완전하거나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은 ‘감사자료’로 하여 차기 감사에 활용토록 하고 △입건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감사기관, 피감사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김 당 기자

3. 언론 및 각 단체 반응

#경실련 성명서

#사설

#관련기관·단체의 입장 및 성명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유출사건과 관련 이문옥 감사관이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심적인 공무원을 구속시킨 금번 사건은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으로서 이는 정경유착의 실상을 드러내고 경찰을 위시한 정부 당국의 제반 사정업무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존립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건이다.

정부는 이문옥 감사관을 즉각 석방시키고 재벌의 토지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재벌들이 업무용으로 위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소유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있는 그대로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이번 은폐기도는 전국민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경실련>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의 변호를 위한 변호인단을 즉각 구성함과 아울러 이문옥 감사관 구속과 정부의 재벌에 관한 정보은폐 기도를 규탄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990. 5.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741-7961-5; FAX 745-8006)

“공익차원 정보공개는 의무”

‘이문옥 감사관 전격구속’ 법조·학계 반응 국민 알 권리·언론자유 침해 우려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감사원 간부를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것을 들러싸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서영훈 사장의 퇴진을 물고온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전에 언론에 누설된 사실과 비교해 정권쪽에 유리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이 편파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 허영(현법학) 교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통치권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을 기초로 매우 포괄적인 해석을 하는 등 문제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행 판례에 따르더라도 재벌기업들이 생산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하는 등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린 행위는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제보자가 밝힌 대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알렸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실천한 것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현 변호사는 “얼마전 KB 청정배 변호사는 “얼마전 KB S에 대한 감사결과가 일부 언론에 사전보도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이번 구속은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공의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보

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이번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 변호사는 “문제의 내용

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져야 할 것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비밀을 염수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제보자를 구속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방정배

교수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공적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탁받은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의무”라고

전제, “이런 의무수행을 범법 행

위로 규정해 구속하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

시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90.5.16

감사원을 ‘감사’한 이문옥 서기관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감사원의 이문옥(52) 서기관이 사실상 배제화돼 있던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조사결과를 <한겨레 신문>에 제보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과행적인 운영을 막자는 충정에서였다.

이 때문에 이 서기관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된 뒤에도 스스로 출근, 제보자는 자신이며

을 밝혀냈으며, 조세당국의 이에 대한 감시 역시 여러가지 이유에서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한창 진행되던 조사는 중도에 갑자기 중단됐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는 묵살됐으며 이어 12월말 인사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상급에 있는 과장, 국장까지 ‘좌천’되고 말았다. 상사로부터 감사중단의 배후에 재벌기업의 로비가 개입돼 있다는

과행적 운영 막기위한 충정

재벌로비등 배후에 실망…신문보도에 감사

자신의 본뜻은 감사원이 올바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위의 동료와 상급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기관이 23개 대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올해 초, 그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높다는 것

임을 들은 그는 감사원기능의 독립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됐다.

이달초 <한겨레신문>에 조사 내용을 알려온 그는 지난 11일 기사가 보도될 때를 택해 휴가원을 제출하고 마음을 정리했다. 휴가를 떠나기 직전 중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아빠를 이해해달라. 우리나라와 감사원을 위해 한 일이다. 용서하라”고 다독기렸다고 부인(46)이 전했다.

<이홍동 기자>

監查官의 구속

이문옥 감사관은 '알 권리'에 기여

정부의 재벌 ‘제재’는 시늉뿐인가?

정부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만을 '갈라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감사원의 이분우 감사관이 제밀의 비밀무용
무봉산 혼례에 관한 감사자료를 <한겨레신문>
에 주었다는 이유로 진침과 구속된 것을 보고
특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를 구속한 것이야만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총체적 난국'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재민들의 망루기들을 지목해 그들의 망루부를 팔도록 종용한 것이 본래 미친진의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민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안이라고 30년이 가까이 봉직해온 갑자원의 중진 공무원을 구속한 것이다. 어떤 국민도 정부의 두 조치가 합리적 연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자신이 긍정한 정책을 이씨의 구속을 통해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재민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금정이 국민감정을 원시적으로 부마하려는 걸치레에 불과하지 않은 것을 하는 이후을 물리인으로겠다. 더구나 거금은 재민들이 판겼으나 내놓은 망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벌로 있는 쓸모없는 것이 많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씨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감사진과'의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감사진과는 제법 12월에 소속된 23개 기업의 소유로서 가운데 43.3%가 '비밀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은행감독원이 당시 11월 30일 제법 5·6·20개 기업의 비밀무용 부동산 비율 1.2%에 비해 업정난 격차를 보인다. 그리고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의 입력을 받아 중단했다는 사실도 함께 쏙로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씨를 구속한 것은 제법들이 땅투기꾼으로 일컬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자세한 수치와 함께 밝혀진 데다 저절로 이유없이 감사를 중단시킨 정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다.¹⁾ 이 사실마저 보아도 제법과 권리의 위상이 같다.

정부가 이문운 김사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데 내린 이유는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은 '간사와 간사가 14일간의 짧은 기간에

평민 “이문옥씨 오히려 포상해야”



◇...감사원의 이문욱 감사관
이) 감사자료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되
자 김태식 평민당 대변인은 16
일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치면서 재벌의 투기실태를 언
론에 알린 공무원을 구속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며
“이씨는 구속될 것이 아니라 오
히려 포상 대상”이라고 말했
다.

한겨레 90. 5. 17

34

이루어져 내용이 부실화 테다 비임무용 무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뒷다 은행감독원 발표내용과 평면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이 손상유 위를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했다는 것이다. 물론 비임무용 무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이 범인세법, 지방세법 및 토지조례이 특수법 등에 따로 정해져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심하지는 않으며, 차이가 있다 해도 1.2%와 43%의 크게 동떨어진 수치로 니터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기업체에 직접 나가 일일이 확인한 것이어서 은행감독원이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향상에서 판정한 내용보다는 훨씬 정확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빛나는 이유없이 감사를 중단시켜놓고는 이제와서 '무실감사'라고 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씨의 구속이 제기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은 정부가 비위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인신구속부터 하고 보는 구속반동의 생활을 갖
고 있다는 점을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또 정부가 제법으로 무동산 소유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을 일부러 기피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씨의 갑자
기로 폭로가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되는 것
이나의 문제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이씨가
재벌기업의 비리를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 권리'
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는 군사기밀 등 국가의 침전되는 국가기밀을
드러내거나 공부집행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알렸을 때 성
립된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분은
감시관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갑자기
괴를 개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부
여당이 빛이난 '총체적 난관'을 타개하는 데 기
초적인 도움을 주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이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상식이나 민감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이 물운씨의 고속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90.5.11

감사원의 감사권이 「회계법상 010」에 고려한 자료를 통해 언론기자에게 「누설」되었다고 해서 회계법의 구속력이 확장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보도와 진술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각의 주제는 어떤 핵심 내용인가
발표 23일 기준으로 미리보기 부동산 투기로
에 관한 국세 대체세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에 감사원은 국세청과 국방부 그리고 지방
로 토대로 그들의 일정 부동산 투기 비율
이 43%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작성하였다가 최근 이를 언론기자에게 보도
보도하게 함으로써 관계기자에게 「국세감사를
실무」 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국세감사관을 구속하는
다른 감사법과의 상관성이 높아서 가능하지
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험담
은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상
비판을 시사하고 있다. 모든 국세감사는
모두 국세법상으로 정해져 있다. 예전 국정원의 의혹
비밀문서로 분분된 것과는 다른데, 국
감사관이 유출한 자료는 비밀문건의
로 분류된 바 없다.
대법원 판례는 법원에 의해 비밀로
분류당된 문서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정
치 경제」 군사·외교 또는 사법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업을 몰랐던 청부나 소
무료로 된 사업을 몰랐던 청부나 소
로부터 국세감사 자체가 당연히 엄청

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살피고
한 이익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주씨의 자료유출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비밀로 하는 것보단
다 밝히는 것이 사로잡을 수도 있으며
국민의 삼玷한 이익에 부합한
우라는 예상치 주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을 때는 어쩌면 외하고 있는 인식
이다.
또 검찰은 주씨의 행위가 윤행각록 원
들의 풍선히를 크게 실수쳤다는 주장이다.
이데 그자료가 허위고 허무맹랑한 것이라
면 모를까 저어도 감찰을 가진
관이 14일간 조사한 결과라고 학진대,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정 chiếm과 세실태
를 조사해서 밝힌 것은 오히려 정부
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관점
에서 봄다. 검찰의 주장은 거부방문마저
열고 있다.
법적인 문제점을 떠나 우리는 이번
구속사건에서 정부의 민주화 의지와의
실마리는 물론 보다 23개의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조사는 주씨
들이 스스로 閱知해서 차수한 것이다. 아니
라 지시에 의한 짓이었다. 각 기관으로
서 마땅히 해야될 조사가 14일밖에 '상
부지시'에 의해 날짜를 맞한 셈이었고
증인된 사실을 우리는 주씨의 구속
그 자체 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았구가

교민이 이른 시시때 놔둔 서류에는 그만한
이름과 출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지만 이전
와서는 알수가 없었다. 그만한 서수가
해당 재료를 끌어내고 나서에 부딪쳤고
그런 재료의 입구와 속구에 의해 갑자기
가『리인』이라는 키워로 충격을 입으면
설득되는 것처럼 이『설립』의 풍선처럼 이드
노트북으로는 절대로 풀수는 아란다.
설립『설립』의 끝에는 청탁 재료의 3
정부부록이 43%나 되는 것인『리인』은
설립『설립』에 풀수는 아란다. 끝으로 자료를 얻

본기관에 내주는 암으로의 사태를 막는데 있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들이 나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새별의 업무부동산 비중이 43%를 뛰어는 사실을 은인으로 점작게 되고 또 정부가 재벌들의 비리를 보호하는데 합당하다는 입장을 넘기고 있다는 전통을 정부에 일깨워 주고 싶다. 총서의 험악한 정치로 다스리지 않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형법의 미움으로 끌고 나온 이 상우 리는 그 귀족들을 끌까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90. 5. 17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을 구속하면서 정부는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김철의 구속영장을 보면 “23개 기업에 대한 감사는 범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나 은행 간독원이 행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는 은행간독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면서 그 판정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장은 또 “〈한겨례신문〉 기자 2명에게 감사 보고서 사본 1부를 긴네주어 그 내용의 전체가 마치 진실인양 보도케 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보도내용이 마치 오보인 것처럼 적고 있다.

우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세청이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여신관리 규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법 인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같다”고 못박고 있다. 최근에 판례규정들이 개정되기 전에도 여신관리규정과 범인세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김철은 또 이 감사관에 대한 1차조사에서 업무용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를 2~3건 찾아냈다면서 ‘득의 양양’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47건 가운데는 업무용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있음에도 이같은 ‘초법적인’ 조처를 써야 할 만큼 기업의 땅투기가 심각하게 된 것은 결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전문회사를 ‘○○개발’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특별전담팀을 회장직속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투기를 규제하는 정부관리들의 ‘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그들의 대처방안을 수립해 보고한다.

또 규정이 엄격해도 관리들의 해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용을 가장한 비업무용 토지매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직원에게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준 것처럼 거짓 체무변제 약정을 하는 형식을 설정하거나 가동기를 하는 방식으로 안전판을 만들어 두기도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삼성·해태·두산 등 13개 기업이 23개 지역에서 양돈업을 구설로 사들인 데 9백43만

평 가운데 6.8%만이 양돈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50대 재벌의 7백71개 업체는 88년 말 현재 전체 보유토지의 41.7%를 원료채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실상부한 원료 채취장도 있었지만, 나무 및 그루 심어놓은 임야는 목재와 펠프원료 채취장으로, 모래와 자갈이 좀 있는 곳은 괈재 채취장으로, 야산은 토석 채취장으로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는 이 감사관이 폭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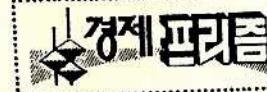
결국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선 관리들의 사명감, 이들을 감시감독하고 외부의 입김으로부터 침저하게 보호해주는 사정기관의 노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구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난 14일 “특명사정반은 부동산투기 조사 광무원의 활동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외부의 영향으로 감사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감사중단 사건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바로 그 정부에 의해 구속됐다.

〈이봉수 기자〉

한겨례 90. 5. 18



감사관 구속한 ‘두얼굴’ 정부

평 가운데 6.8%만이 양돈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50대 재벌의 7백71개 업체는 88년 말 현재 전체 보유토지의 41.7%를 원료채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실상부한 원료 채취장도 있었지만, 나무 및 그루 심어놓은 임야는 목재와 펠프원료 채취장으로, 모래와 자갈이 좀 있는 곳은 괈재 채취장으로, 야산은 토석 채취장으로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는 이 감사관이 폭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선 관리들의 사명감, 이들을 감시감독하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침저하게 보호해주는 사정기관의 노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구영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난 14일 “특명사정반은 부동산투기 조사 광무원의 활동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외부의 영향으로 감사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감사중단 사건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바로 그 정부에 의해 구속됐다.

〈이봉수 기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 부조리 칙침을 위해 부동산투기 등 처부형 범죄와 개발계획 등 직무상 비밀을 사전에 누설하는 국가경제 역행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민정 죄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의하여 제직종은 물론 뇌적 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그러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그런데 이 망첨의 첫 회생자가 23개 재벌계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애초에 은행간독원이 발표한 1.2%가 아니라 43.3%에 이른다는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넘친 감사원의 감사관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 이 망첨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감사관에게는

점친은 이 사건에서 첫째,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그 동안 발표된 것과는 달리 무려 43%에 이른다는 사실, 둘째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는 사실, 세째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에 대해 은행간독원이 발표한 1.2%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네째 감사원의 감사가 재벌기업의 로비에 의하여 중단된 다음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이 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내용 중 어느 것도 형법 제12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조 용 환

자살로까지 이끌 정도로 개중 사이의 분위과 긴장을 살피시키는 주범이 특히 재벌의 부동산 투기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민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하여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국민 전체에 대한 공사사인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은 마땅히 그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리줄 의무가 있다.

더구나 감사원은 감사관과 위원·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리를 정개하거나 고발하고 시장 및 개선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5조), 감사원의 감사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를 중지시키고 결과를 감추으로써 오히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자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는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이익’과 ‘필요’가 과연 누구를 위

누구를 위한 ‘직무상 비밀’인가

이문옥 감사관 구속은 부당하다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 설죄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형법 제127조가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개인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83. 6. 22. 80 노2922 판결).

이 판례가 형법의 구성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이기시지 못한 이유는 있지만 이 판례에 따르더라도 그 감사관이 개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시민들은

한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의 망첨이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니면 그 쉬운 나시 은폐하여 국민이론을 잡아우기 위한 것인지는 이 사건의 결과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를 공개한 감사관을 구속하는 조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자는 맥락 그 전부인 정책개선을 차단하는 행위로써 예상한 속죄암수 만드는 것으로 ‘불법’ 사유가 회제신고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뛰어넘는 대에는 “공무원이 현장부가 아닌 전장한 국가이익을 위한다는 핵심하고 대수로운 차원의 원래에 보낸 것은 저가 왼된다”는 1985년 당시 러던 청사법원의 판결이니, 형법 제127조의 조문이 아래에 있는 일부에 얘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겨례
90. 5. 18

'비밀누설' 범위 불분명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

사관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한 문제의 제보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감사원이 재벌그룹 산하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 외부 입김으로 갑자기 감사를 중단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재벌의 부동산투기가 공식발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李文玉씨가 제보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한겨레신문>에 제시한 자료 사본의 공식명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 賦地감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9월 감사원 제2국과 감사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작성했다. 여기에는 고위 간부의 지시로 감사를 갑자기 중단하기 전까지 재벌그룹 소속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가 수록돼 있다. 23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3천1백 23만평 가운데 43.3%인 1천3백53만평이 비업무용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바로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오차 감안해도 20%는 될 것'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들은 허가기준을 초과한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거나, 형식상 용도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방치 혹은 임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동아건설과 회성산업은 이중 충남 남포면 양항리, 경기도 이천군 해월리 땅을 지난 10일 발표된 '10대 재벌 부동산 대각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43.3%라는 수치 자체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보기 힘들다. 검찰에서는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기간이 14일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분류기준도 조사대상인 23개 기업의 법인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의 자체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씨 또한 제보 당시 "43.3%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마지막 확인과정에서 업무용으로 판정될 땅도 있겠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를

89년 8월 감사원 감사 당시 비업무용으로 지적된 대기업 부동산 보유현황

회사명	부동산 소재지	면적	비고
(주)금호	광주 광산구 소촌동	12만862평	목장용지 중 사육두수에 따른 시설기준 면적 초과보유
기아산업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3만4천744평	농지를 비업무용으로 정기보유
(주)대우	경기도 용인시 쇠사연 대구 낭구 봉마동 이파크 품	6만1천844평 58세대	연수원 주변 일야 세우서장 관사용·세우서 직원 학숙소용으로 무상임대
동부제강	서울 을지로 등자동	2천24평	제2법사업 허가받고 경기판 나대지로 보유
동아건설	충남 보령군 남포면 인천 서구 가정동	7만4천342평 3만1천546평	농지제 공사 때 토위장으로 허락해 비업무용으로 보유 로서장으로 사용했던 일야
삼성생명	서울 금남구 일원동	22만2천40평	사용·복지시설 용지로 취득, 나대지로 방치·대리경작
삼성전자	경기도 수원시 매현동	3만3천640평 2만1천355평	공장용지를 나대지로 방치
쌍용기획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2백36만5천22평	광산용지 중 평구용 허가기준 면적 초과보유
유공	서울 성동구 미장동	1천482평 3만1천456평	학부부지로 쓰고 남은 땅을 제세시설 명목 경기보유
(신경기업)	경남 울진군 용면동	3천7천평	종업원 사택 부지로 일야
동양기발	(신성기업)	경기도 수원시 물진동 대구 군포시 부곡동	과수농장을 주사업과 관계없이 취득, 보유 업무와 무관한 일야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물진동	257천66평 36만2천44평	주업으로 관계없이 골프장 경목으로 보유
동양신협	서울 미포구 암사동	건물(대지 8백10평)	반집으로 보유하거나 계열사인 중앙건설에 무상임대
동양일보사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3516천4백65평	농경지
	충남 대전군 은현면	44만8천평	집값지어 업무와 무관한 땅으로 풍 설치·운영
	부산 해운대구 동동	9만9평	연구소 부지 허용기준 초과보유
	제주도 연동	3백35평	업무용으로 취득한 뒤 경기판 나대지로 방치
청구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3천7621천74평	주업과 무관한 일야
한성관광개발	경기도 수원시 하동	1만4천3백61평 건물(3백70평)	수영장 등 업무와 무관한 대지
한일기발	(한진기업)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주업과 관련없는 골프장을 부동산으로 취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천40평	호텔부지로 취득, 경기판 나대지로 보유
	경남 김해시 내동	4천14평	이파크부지로 취득, 경기판 나대지로 보유
	서울 을지로 101동	2백27평	주유소 사설 허용기준 면적 초과보유
	제주도 서귀포시 토성동	1천84평	기숙사 대지 기준면적 초과보유
	제주도 서귀포시 토성동	4만1천평	사업용 건축을 부속대지 기준면적 초과보유
제동통신(-)	제주도 남제주군 조선읍	3백56만2천6백65평	목장용지 중 사육두수 기준면적 초과보유
현대신업개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934천4백70평	주택건설용지로 취득, 경기판 나대지로 보유
현대자동차	경남 울진군 일정동 등	1만7천94평 1백4천7천34평	공장건축을 허용한도면적 초과보유
호남정유	(국기금설계집)	전남 여수시 소호동 경북 포항시 흥포동	공유수면 예일해 자동차 주행성장 실험장으로 취득, 미완 공 상태로 보유
	서울 중구 소공동	3천6천84평 2천6천34평 1천6천44평 1천4백15평 건물 52평	종업원 사택부지기준 초과보유
최성신업(-)	경기도 이천군 예월리	32만1천8453평	집유소 부지 미사용, 허용기준 초과보유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일대

시사저널 1990. 6. 3

관련기관·단체의 입장 및 성명

검찰 입장 : 피의자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는 14일간이라는 단기간의 조사에 의한 부실한 것으로 부정확하다. 더구나 피의자가 행한 23개 기업에 대한 감사는 8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기하여 행한 것이나 은행감독원이 행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조사는 은행감독원 자체기준에 따라 5백20개 기업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 자료의 평면비교는 부적절하다.

은행감독원 : 우선 양쪽 기관이 선택한 조사대상과 기준이 다르다.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상 협의가 질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사를 했을 가능성이 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점을 때문에 양기관의 자료는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하다.

민당 金台檀대변인은 평 : 감사원의 과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한 이문옥감사관의 구속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태도의 허구성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다. 검찰은 소신있게 공무를 수행해온 이문옥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려는 반민주적 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민주당(가칭) 張石和대변인 논평 : 우리 당은 정부가 이문옥감사관을 구속한 것과 관련, 이를 소신껏 복무하려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일대 협박으로 규정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특명사정반'까지 만들어 공직자·재벌의 비리를 쇄신하겠다고 공표해온 정부가 이감사관을 구속한 것은 민자당 정권의 이중성을 입증하는 실례인 것이다.

민련 朴祐燮대변인 논평 : 이서기관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사실은 평에 항거, 감사보고서를 전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언론기관에 공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자 의무이다. 麥정권은 지금이라도 재벌의 부동산투기 실태를 공개하고 이서기관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 성명 : 금번 사건은 87년 박종철군 고문사사 사건과 비견되는 것으로 이는 정경유착의 실상을 드러내고 정부 당국의 사정 업무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현정권의 존립 정당성을 짚어낸 사건이다. 정부는 이감사관을 즉각 석방시키고 재벌의 토지투기 근절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감사관의 번호를 위한 번호인단을 즉각 구성하고 아울러 이감사관의 구속과 정부의 재벌에 관한 정보 은폐기도를 규탄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성명 : 이문옥감사관 구속이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편파적 법집행임을 지적하면서 이감사관의 즉각 석방 및 사직당국의 공정한 법률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협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실태가 결코 국가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또 지난 2월의 KBS 수당지급에 관한 감사원 감사 내용의 시전유출과 비교해 이번 이감사관 구속은 사직당국의 국가기밀 기준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나 재벌의 이익보호를 앞세운 편파적인 것임을 드러낸 계기가 됐음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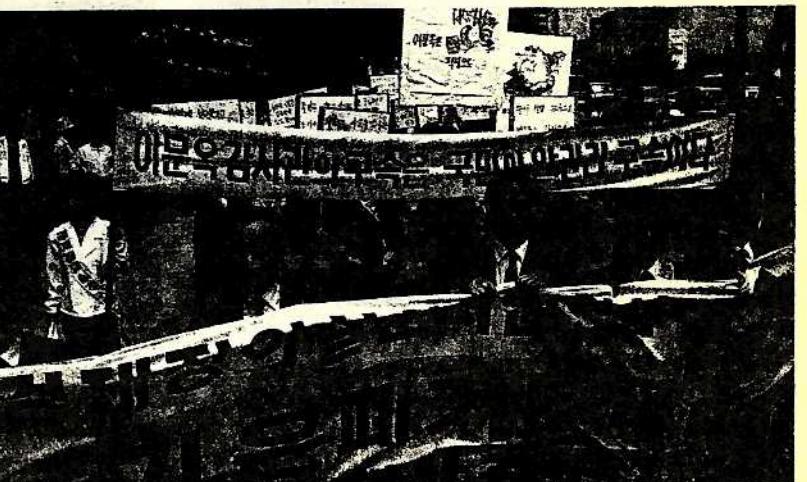
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성명 : 이감사관 구속은 현정권이 특별사정반까지 구성,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겠다면 의지뿐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또 이감사관의 구속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재벌의 부조리를 비호하고 언론인의 취재원 접근 또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한다.

달아 약간의 유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친인척·임직원 명의로 위장분산 소유하는 관행에 비춘다면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율이 1.2%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씨도 검찰에서의 1차조사 때 "그렇다 하더라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20%는 될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벌 부회장이 조사중단 로비

재벌의 부동산투기 확인과 아울러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감사가 대기업 관계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중단됐다는 부분이다. 이씨의 주장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은행감독원의 공식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기업과 부동산 소재지에 조사반을 투입, 현장조사를 벌이던 중 상부로부터 갑자기 감사증단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이문옥 석방하라" : 19일 오후 경찰현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이문옥 석방하라 시민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역시 상부지시에 의해 '법인의 부동산투기는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토지공개념 도입 및 세법개정이 추진중이므로 차기 감사자로 한다'는 의견이 불여진 체 감사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감사반의 조사가 중단된 시기는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삼성 소유 부동산을 현장조사하던 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는 "어떤 재벌의 부회장이 감사원 고위층을 만나 조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뒤 감사를 더이상 확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감사반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런 이씨의 주장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와 재벌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상습 부동산투기꾼 명단 발표' 등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던 때에 '일'이 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이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격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쪽에서는 이씨가 평면비교가 부적절한 두 기관의 조사결과를 언론기관에 누설함으로써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끼치고 해당 기업의 평가에도 피해를 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당이나 쟤야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알린 것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만큼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정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보고서가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

서 재벌의 비리까지 비밀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얼마전 KBS에 대한 감사결과가 사전에 보도되고도 별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점을 상기시키며 법집행상의 형평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씨의 구속은 제보 내용으로 인한 파문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비밀보호' 중 어느쪽이 우선하느냐 하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
金善葉 기자

국민은 법원의 판단 주시

李감사관 제보내용 '비밀보호' 필요한지 의문

'알 권리'는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야 하며, 의견형성은 정보의 입수를 전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알 권리는 '알릴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89년 9월의 결정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내포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알 권리가 정부의 비밀사항과 충돌하는 경우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말하면, 알 권리 또는 정부비밀의 그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항상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반면, 정부비밀의 유지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때문이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비교衡量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실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그 판단의 권한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돌아간다.

최근에 감사관 구속사건에서 적용된 법조항은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규정이다. 이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지정된 것을 말한다. 학설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를 더 확대하여 부풀리고 있다.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부나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사항은 비밀로 분류·지정된 것이 아니다. 위의 판례는 수긍하기 힘든 것이지만, 설사 이를 따른다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보아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주시할 것이다.



'이번 제보는 비밀사항 아니다.'

공무원의 정보제공 '당연'

"비밀누설" 구속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위협'

【】 주적 지배체제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선행한다는 데 있다. 기본권이 유린되면 인간은 그의 인간됨을 파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기본적인 권리가 행사됨으로써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감정과 관심을 말하거나, 타인의 말과 글을 듣고 읽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실현한다.

말하는 행위와 말 듣는 행위는 그러므로 인간성숙의 기본조건이요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가 거대화·다원화·복잡화한 현

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국민 개인들의 언론권이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의 언론 미디어들에 의존해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 즉 국민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듣고 알고 혹은 말을 한다. 따라서 언론이 자유롭고 열려 있을 때 국민의 언론권 행사가 가능하며, 언론 또한 국민의 언론권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 헌법 21조의 '언론자유' 정신도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언론을 통해서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을 함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지체없이 보도할 의무가 있고, 정보원에게 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넘겨줄(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특히 정보원이 국가기관일 경우는 언론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언론기자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이란 것이다.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이문옥 감사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감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처벌받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공무상 알게 된 투기정보를 유출, 폐돈을 벌게 하였다면 그런 정보는 언론정보가 아니라 공무상의 비밀정보가 된다. 그 때문에 '이감사관 구속 처사'는 국민이 알아야 마땅한 언론정보와 투기의 빌미가 되는 '사적정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느껴진다.

'이감사관 구속처사'는 정보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사회에서 정보원에 대한 위협이요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공적 정보가 그렇게 위협받고 통제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이 근본적으로 제약당하게 마련이다.

●
方廷培 (성균관대교수·신문방송학)

4. 이문옥 감사관 구속적부심 관련 내용

구속적부심 관련 기사

이문옥 감사관 진술 내용

구속 적부심 기각 기사

이문옥감사관 구속적부심 청구

“기업 땅투기 공개 비밀누설죄 적용 부당”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질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우(50)씨가 22일 박재승 변호사 등 20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재벌기업들이 생활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

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검찰은 23개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43.3

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진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검찰은 23개 재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43.3 %에 이른다는 감사내용이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손상시키고 해당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기업피해 여부를 공무상 비밀로 본 법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감독원의 1.2%라는 통계는 믿고 감사원의 감사는 믿지 않는다는 검찰입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검찰은 23개 재벌
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43.3
감사원의 감사는 믿지 않는다는
검찰입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감사도중
감사원 사무총장 안경상씨가 ‘중
앙일보’ 이종기 부회장을 만났더
니 행정개혁위원장 신현학(삼성
물산 회장)씨가 감사원 기능을
축소하려했던 것에 감사원이 앙
심을 품고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
고 불평을 하더라”면서 ‘당신이
삼성을 쑥발을 만들려 왔다고 말
했다던데 사실인가?’라고 물어 부
인했는데 안 총장은 이를 수긍하
는 척하더니 오히려 감사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이 사건을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에 배당, 23일 오전 11시 4. 18호 법정에서 심리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다.
박승재 정용식 횡인철 황산성
한기환 천정배 윤종현 박인재 정
성철 이진호 김동현 박성귀 김주
원 박영립 양승찬 신기남 오창수
우수영 이경우 김삼희.

한겨레

90.5.23

本가사과풀로 사시인가 本家사과풀로 사시인가

“搜查당국서 「監査院비리」 가려야”여론

서울市 선거 때 88億 지출 大企業 과세 監查 중단도

회자체가 뮤산했다고 진술 했다.
총서[總書]에 있던 글에
에는 선제[先哲]의 대답
법으로 추정되는 대답이
했으나, 김사현[金始賢]이 「고집
하는 자[執拗者]를 놓아두지
않았다.」
며 당시에서 제의했던 그의 말
했다.

재벌비호의혹집다

經實聯
철저조사책임자문책주장

90.5.24

李감사관 재벌기업 감사관련 진술내용

卷之三

있다는 이유로 아예 감사대
상에서 제외됐다.

죽내물통 21억원의 사육처
그렇게 물이를 일으키느냔
가 전해 밟았지 않았는데
특정기업을 손대지 말라. 무

한편
24일
2월
李成
의 주장과 관련, 선경그룹이
법무부 12억원
누락사정은

90.
등록 5.24

3千億수익 삼성생명 稅金 80億원
고위층사돈 鮑京 감사대상서 제외

속편 각자원 감자관 李文正
씨(50)는 23호오전 구속되었다.
심 설리과 정현에서 오부 장금이
로 각사를 중단하는 데 감
원의 파악되어 유통이 적자
않았다고 주장했다.
축서는 일설 회인선을 통해
서 자신이 언론에 제보한 차
년 장금의 재벌기업 비밀을
부동산 부자화에 대한 각
사가 외부의 압박으로 도
에 종단되었던 것도 삼각그룹
선풍기류 현대그룹을 재벌기
업이 관리를 사안에 대한 각
사가 선풍기류 양현 이우호를
증거로써 증명 과정을 겪었다고
밝혔다.

3千億수이
현대 회사도
12만5천명에
이느 부당한데
있으니 이들
에게 대체로
사생까지
으로는 열등하고
스천장과
세진 각서에
나인세가
로 드린 보증금도
우도 되었고
그를 헌장
으로 떠났다.
또 삼성생명이
逃離한데
12만5천명
이었을 때
서울고법
京畿도華城
법원에 들어

시에서 우편회사를 비롯한 관공기관과
시에 학교와 학원에서 학생전용으로
우편회사 주식을 50%의 가격으로
로 구입하는 법으로 약 2천 5백억원의 거래처임을 어필하고자
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大賞서 제외 稅金 80億원 臺 차익챙겨

KI 선전포고 선선장관에게 18년 65억원의 대여를 받았지만 대여금이 연체와 관련되어 것으로 판정되어 불문처벌되었단다고 해명했다.
또 삼성생명의 정경우 자이 이 3천억원에 대한 간사증 단주장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수뢰금으로 세법상 과세할 수 없는 사항에서 감사대상으로 정해졌지 이 없이도 주씨가 수익을 얻은 복고 사건이 되는 것처럼 임의판단한 것으로 추정되고 말했다.

「監查院비리」 정치爭點化

李감사관 폭로내용
野

野 진상조사 國 調權 報 卦

동아 90.5.24

재벌기업의 토지내용간사
결과를 어른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李又雨前감사
원감사관이 구속전부설립
를 통해 폭로한 특정지벌과
권력기관의 검사방해이며 서
울시 예산의 대물령선거자금
유용 문제가 커다란 정치적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3·14·15면에 관련기사

한국 회자와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문제는 그동안 누적
돼온 관행과 비호와 재벌과
업계에 대한 비호들과 관련하여
체적인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
을 뿐 아니라 廉潔奉公 대우법과
시돈관계에 있는 재벌기업도
관련되어 있어 6·15 남북 정협의
도덕적 기반이 깨어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은 21일 당전 金大中
총재 주재로 '과대간부 회의'를
여기 서율시와 각사원 그리
고 수시로 각자 중단 암행을
행사해온 韓大中 및 관계기관
에 대해 임시 회의에서 국정
조사권 남북통일 요구하기로 했

화대간부회의는 이 요구가
民自憲에 의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설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대응해 나가며
여기에는 屬外大중집회를 표시
하기로 했다.
한시기로 했다.
주간들이 이를 회의에서
李갑사 박이 國政부 폐신을 품
로한 것은 솔직히 公職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락장을
인륜자유에 보호함이며 △국
무원의 치무위에 충실했으며
는 차운에 즉각 서방하고
고 촉구하는 한편 李갑사가
죽기 시도되었을 전기 등
로 했다.
金樹外벌들은 이날 밤

페비리가 일대진위를 진찰한 뒤에 이걸은
라마서「검찰은 서둘시 허용이 필요로
산 88억여원에 대해 증거를
사찰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民主黨(가천)의 張在利
변인도 「남성면은 발표「季
사관이 범한 권리의 부폐상황
處處應對의 정밀설명에 중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경찰
파출장을 할 수 없다」며 국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 했다.
張대연인은 「아울러 주민
가 재기한 88억여원의 자금
용에 대해 서술과 점수
스스로 국민들에게 진실
방정하고 촉구했다.
이어 관련 民主黨의 한
위 남자자는 「주前감사관이

이에 주수는 한 은 한 감 대 악 회 유 류 가 을 고 인

서울시 예산 88억 선거자금 전용

이문옥감사관 법정진술 87년 대통령·88년 총선 당시

1990. 05. 2

감사 중단…보고서 작성때 내용 빠져

서울시, 법에 따른 집행 주장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와 8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가 시 예산에서 88억원을 정보비 명목으로 불법 거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 부처의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불법지출됐다는 진술은 23일 감사원 이문옥(50) 감사관(사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무심 실리과정에서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린 신문을 통해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압력 등에 의해 중단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난 88년 1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 도중 대통령선거 당시 69억원, 국회의원 선거 당시 19억원 등 모두 88억 원이 정보비 명목으로 변태 지출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상부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억원, 서울시경찰국장에게 1억원, 서울시 각 구청장에게 5천만~1억원씩 모두 17억원이 변



태 치출됐으며 나머지 71억원은 지출내역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린 신문을 통해 이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압력 등에 의해 중단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난 88년 1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 도중 대통령선거 당시 69억원, 국회의원 선거 당시 19억원 등 모두 88억 원이 정보비 명목으로 변태 지출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상부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억원, 서울시경찰국장에게 1억원, 서울시 각 구청장에게 5천만~1억원씩 모두 17억원이 변

서에 넘겨줬으나 선거자금 불법 지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해 ‘알아서 처리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87년 대통령선거나 88년 총선과 관련,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을 정보비나 관공비로 유용한 사실은 없너”며 부인하고 “수방 사령관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시 예산이 아닌 방위성급 예산에 대한 것이며 시장국장이나 구청장에 대한 예산지원은 당초 예산에 정식 계상된 것을 정상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어 집행내역 불명이라는 예산도 당초 예산상의 거침에 따라 통·반장 등에 대한 주석 및 인발 보상금 지급이거나 구청장에 인발 상우이웃돕기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문옥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도중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인 최종현 씨가 회장으로 있는 선경그룹에 대해 12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추징한 만한 사안을 발견했으나 “윗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청와대나 재벌기업을 통한 압력으로

화인해 봤으나 법인세를 탈루시킨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태우 대통령과의 사돈관계에 따른 압력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선경그룹 최시호 전무는 “각 계열사에 사실여부를

온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감사를 중단한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은 감사 당시(88년 11월 21일~12월 10일)에는 전혀 보고된 바 없었으며 이 감사관이 감사를 마치면서 관공비 정보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된 89억4천만 원에 대한 감사를 미실사항이라고 보고했으나 감사가치가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한 일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과세실태 감사도 로비 때문에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감사비리 규명 이견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총무회 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비리 폭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쪽의 의견이 맞서 긴렬됐다.

“이문옥 감사관 석방

청와대 회담때 요구

김대중 평민총재

이감사관주장 사실과 달라

감사원 해명

감사원은 25일 구속증인 이문옥(50)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원 비리 사실 7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7, 88년 선거정보비로 88억원을 집행했다는 주장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5일 이문옥 감사관 문제와 관련, 오는

29일 청와대 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감사관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내달 2일 시민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촉구 시민대회 및 양심의 행진’을 오는 6월 2일 서울 괴고다공원과 대구 YMCA 강당에서 동시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90. 5. 24

한겨레 90. 5. 26

이문옥씨, 변호인단에 밝혀 “검찰재조사”

1990. 5. 31
270

이감사관과 변호서 “검찰재조사 가능성과 원론과 달라”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원파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 합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선정그룹 관련 증거는 전 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등 재벌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이사장은 이밖에 연소자에 자산을 충여하는 명분으로 탈세 하는 사례를 규명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 관계를 대우그룹의 경우는 증권 관계를 조사했고 사무총장은 절제 조차 하지 않고 체 방치, 감사를 중단했다고 전술했다.

이문옥 감사관은 구속된 이문옥 변호인단 소속 흥영기·조승철·정원파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 합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서울시가 지난 87년 3월 기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제법의 로비로 중단했다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87년

과 88년 시예산 88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 감사관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비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려나 “이 감사관

이 서울시를 감사한 후 ‘감사미

필 사항’이라는 의견을 붙여 감사보고서 작성자에게 이 자료를 제출, 보고서 작성자가 이를 검토한 결과 비목별로 예산액만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미필 사항으로 처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감사관과 의논하여 감사보고서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감사관의 문체인사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은 “그가 당초 감사대상인 광주고속 대신 계획에 없던 중앙일보로 바꾸어 감사를 실시해 중앙일보사 이종기 부회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고 감사과정에서도 불미스런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감사교육실로 전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문옥 감사관은 이문옥 감사관

다문화 가족의 우려에 市政監查 중단 선거비용 轉用에 反對

50



5. 폭로 내용 조사 및 확인

- #검찰 조사/사설
- #폭로 내용 사실 확인
- #사회단체, 언론, 야당의 반응

이 감사관 증언 정치문제화 야권, 진상조사 국조권 발동요구

이씨 자료로 본 서울시예산 선거전용

이문우 경상진이 23일 구속적 무신 금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총선 때 88억원 이상의 행정예산을 전용해 선거관련 비용으로 썼다는 것은 이제 까지 널리 의심을 받아왔으나 '물증'이 없었던 '행정의 선거개입'의 구체적 실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선기 직전인 87년 11월23일 서울시는 87년 예산에서 △ 개보내문화이 17억5천만원을 돌

집행된 보상금·관공비·정보비가 47억3천5백여만원이고 잔액이 14억2천1백만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용어로 '주요사업비'라고 불린 선거대책비의 총 규모는 1백1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선거관련 비용은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의 문제"라면서 "보는 눈에 따라 2백~3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전용해 선거 비용으로 쓴 1백억원이 넘는 돈은 주로 통장들에 대한 보상

선거의 관권 개입 구체적 실상 드러나
통장·주민들에 선심...관변단체 사례풀

려쓰고 △내부행정비통 17억9천만원을 세마유지도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전용하고 △예비비에서 14억원을 '일동기 저소득층 생활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출한 나는 등 총 49억4천만원을 선거 관련 비용으로 쓴것으로 돼있다. 갑자 이전에 이미 예산에서 금, 저소득층에 뿐인 선물, 새마을지도자·사회정화위원·평통위원 등 관변단체 소속원들에 대한 사례품 등에 쓰여졌다.

서울시는 87년 12월2일 시내 1만3천8백여명의 통장들에 대해 6만원씩의 돈을 연말보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 총 8억3천여만원

한국례 90. 5. 25

을 지출했다.

이에 앞서 11월28일에는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비'란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14억원을 지출, 인구가 많은 구는 1억원, 적은 구는 5천만원씩 12억원을 나눠졌다.
또 같은 달에 교육비·행정비 등에서 23억4천만원을 전용해 구청에 배정,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바친 한아기 자금을 규모화

154

۱۰۲

천여명, 해미군공대장 3백여명

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선거 적전인 1월 14일에는 민방위비·방위사업 정보비에서 수방사에 1억원을 전네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돈은 서울시가 87년중 시교위에서 전네받아 수방사에 시설비 등으로 지원한 12억1천만여원의 방위성급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선거홍보비용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97년 다시 선우시 척의 전남비

87년 당시 서울시 정부 경고에
는 각 분야별로 예산에 계상해
있으며 그 규모가 36억원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6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치적 목적
으로 쓰인다는 것이 이번에 입

설립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자금을
용과 관련, 국회 차원
사단 구성을 추진키로
선택 대변인은 성명을
는 노태우 정권의 정봉
한의문을 제기하는 일
과 충직을 금할 수 없어
문육 강사판이 제기
선거자금 전횡에 대해
울시가 국민에게 진상
고 요구했다.

민연주의 이제오 대변인은 "서울시 예산 88억원이 선거자금으로 불법 유용됐고 감사원의 감사

행정이 청와대나 재벌에 의해 중단됐다는 사관의 법정진술을 듣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풍토의 개선과 국정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 갑사관이 주장한 서울시 예산의 유용여부에 대한 갑사 결과를 왕기해 국민의

한겨레 90. 5. 25

증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감사관은 특히 서울시의 관공비
와 정보비를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으며 당시 감사를 받던 서
울시 관계자는 관행상 '관공비'
와 정보비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자료제시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결국 감사거부를 인서를 이 감사관에게 써주었으며 2주일 정도 계속된 감사도 종에 김용래 시장이 총무처장관으로 옮기고 고진 시장이 부임해 감사가 3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C:\\박호 기자>

청소원 8천8백여명 등 총 6만
천여명에게 5천~1만원의 앞
마·티스문세트·비누세트 등 선
물을 전달했다.

이런 선심공세와 함께 청와대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에서는 '8년도 특별기금 확보계획'을 작성해 서울시에 55억원을 배정, 각 별로 2억원씩 민정당 지구당원장과 협의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野園의 재벌기업의 부동산소유자들을 어울려 유출시킨 문제로 구속기(收)李爻王前사(元) 유흘한 절부처(節父處)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관(國政監察官)을 예우하는 데 정정당당히 시키고 있다.
평민당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감사관의 국정조사

사개시를 축하합니다.
민족의 힘으로 88년도
성공한 끝판왕, 「서울시
시민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마이스터 헌정상과 부제상으로
虚泰慶, 양수미 선생에게는
한국예술제 제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고 『한국전통문화』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전시회에 「미술관 전시회」
선구하였다. <한국미술관>
1988

조선 90. 5. 25

大檢、「감사관 폭로 7件」 수사

어제 李 씨 불러 選舉 자금 등 사실 여부 추궁

당시 수석監查官도 곤 소환방침

대전천성 檢察주사부 3과
(檢察本部検察司)는 28일간
사고사법 인해 유찰되었던
의로구 檢察本部 檢察司에
文교자(50·서기관)과 시술을
진행한 시로 철거 소수가 전날
【동안 대기 일의 비밀로 유통】

졌다.

법원의 구속적부설에서 주장
한 서울시 예산 88억 원의 선거
자금전용을 7 가지 비리사례
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하였다.
에서는 검찰조사에서 「그

진술을 뇌물이 했것으로 알려

져 있다.

으로 뇌물 조사한 방침이다.

검찰은 李씨가 서울시 예산

의 선거비용 전용 관련자로 살

서울시에 요청해 당시 檢察

관련자로만 진내방아 정립조

사를 벗어기로 했다.

당시 수석감사관이었던 檢察

검찰화재자는 【주체의 진

세에게 뇌물주고 檢察관자의 진

검사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따라 檢察는 물론 당시 함께

근무했던 감사원 제2국 4과

직원 2명도 곤 창고인자와

직원 2명도 곤

대결승모두사부3과(硫黃
燒板(장판사))는 26일 감사
보고서를 전통기판에 유출
시킨 혐의로 구속된 감사관
윤갑사(李文光)씨(50)는
검찰경찰로 불
려 추씨가 법원에 구속장을
부심 신태평정에서 주장을
서울시에선 88억원이 선거
자금으로 7가지 내용의
사설부에 대해 철야조사
를 벌었다.

검찰은 이씨를 25일 오후
다시 불러 이에 대한 보강
사를 끝마친 뒤 26일 이씨
를 광주상 기관수사처로 이송
구속기소하고 그동안의 수
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이 학계자는 「오씨
에 대한 조사는 진상을 규
명한다는 수사차원이라기보
다 오씨가 언론기판에 강
사보고서를 유출시킨 것이
광주을 위한 것이라고 주

해보강수사를 봤다고 염
것이라고 밝혔다.
정찰원 그동안 수사를 통
해 죄수가 전부로 살리과
점에서 주장한 7가지 비
리에서 88명 38명이 살리과
죽음당하자 2천여 명이 원
과 범행범 3천여 명이 모
두 3천여 명이 이길 때 남
기고도 80여 신고하고 80
여명이 살리과 주장을
등 6가지 내용이 죄수가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단
편하고 부정한 속을에 은
온 아니라고 밝혔다.

고인 조사에서『당시 재상의 비밀을 들키자 한 감사가 출판되었던 법가의 토미에 의해서

10

90.5.25

大檢 7

李文王감사관 철야조사 大檢 7 가지 非理 진술 眞偽 여부

60

이문옥감사관 진술내용 조사

대검 정부 공신력 악화…사실여부 확인 법조 공정수사 의문 국회서 진위 가려야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
는 24일 이문우(50) 갑사
수사부실 실리과정에서
갑사원의 미리를 쪽로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하고 1차로 이 갑사반

조사했다.
그는
이 이같은 조치는 이 갑사
반응이 갑사원 등 정부
단기
관내용이 갑사원 등 정부
조사
공신력에 대한 여론을 악
둘
자신의 부를 가리지 않을

장화국 정부의 도덕성에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보입니다.
다 밖조계에서는 이 감사
직 직속이 기관의 실무와

미리언 만큼 이에 편한
수시 입학을 믿을 수 없다
들이 사회가 국정조사원
진정을 가려야 한다고
고 있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이씨의 진술내용은 구속과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나 이 공개적 쟁점이 된 이상 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용을 '미신보고(심사하지 못한 내용)'란에 적어 넘겨주었거나 전술한 심을 중시, 이 보고서를 받은 당시 5국4과 업무일 수석간사관 등을 불러 조사한 방침이다.

현제로는 이씨의 전술내용 대상으로 본격수사를 벌일 것입니다"라고 말해 대검의 일단 사실확인에 중점을 뒀을 시사했다.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사건을 대검 조사실로 불러 예산의 선거자금 불법지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정화를 끝내고자 했지만 그 수사결과를 민지 않으려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막아놓은 문제다. 서울시 감사위는 20일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병모 변호사도 “정부 스스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를 믿어야 하나 생각이 아예 이쪽이나 다사자처럼 서로 고집하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록 3당통합 이후 그 기

한겨레 90. 5. 25

監查비리수사종결

90.
동아 5.26

檢察 관계자 18명 조사… 사실 확인 안 돼

부분이 한자도 없었으므로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사부
는 이날 충북에 대한 수사를
중지해 충주를 광주성 비밀누
설립이란 구속기소했다.
제보인 충북가 주장을 뒤
받았던 충북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장을 제기해
국회 판권부(국회의회법) 압
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을 통과
△80년 부정경쟁자 확산 사실
태동 대기장은 「충북가」 단순
히 광주를로부터 들어온 풀풀
이었으며 확정판례로 사설부는
제3항에 규정한 「충북가」
는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
하고 밝혔다.
제3항에 광주를로부터 들어온
인쇄 저작권 대체로서 「충북가」
는 누구인지를 묻는 제3항에 규정
한 「광주를로부터 들어온 풀풀
가 허가권으로 전시하고 판권
본 것이라고 밝혔고 「광주를
설명하고 「광주를로부터 들어온
풀풀」은 「광주를로부터 들어온
풀풀」이란 「충북가」

25일 이틀동안 주식의
사원 13명 국세청 2명 서주시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檢察、監查院비리 조사

李감사관 실문
본격搜查아닌公訴유지 차원

감사원-서울市에 감사기록등 資料제출 요구
前감사원 사무총장 安景相씨도 불러서 조사

각자와각사각주포씨(50)
의 할상미루설립이를 수
사하고있는 대전광역시수부
제3과鋪鄰부장원서는 죠
서가 구속정부설 설립과전에
서 주장을 갈수있던대용에
대해 사상부통을 확인기로
하고 24일 오후 충남서울경찰
로 불러 밤11시까지 조사한
데이어 25일오후 다시 조사
키로했다.
결과는 이날 서울시 예산
구 4과 보고서를 당시 각자원 5
경찰은 이날 서울시 예산
로 불러 밤11시까지 조사한
데이어 25일오후 다시 조사
키로했다.
결과는 이날 서울시 예산
구 4과 보고서를 당시 각자원 5
각자와각사각주포씨(50)
변태지출과 각자원부의 감
사증대지증에 대한 촉진
법제동 관계자들을 불러 조
회한 서울시와 각자원부에
감사당시의 기록을 관계자료
를 제출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결과는 촉씨가 지난 88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작후
태지출증에 신내용을 기재한
서울시에 대한 감사작후
변태지출증에 신내용을 기재한
차원에서 사설부통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

50% 90.5.25

사설

'부정축재' 증발을 국정조사하라

한 중견 공무원의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결단과 행동은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패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 문육 감사관이 폭로한 정부의 비리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거액의 돈이 행방이 묘연한 채 어디론가 증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문육 감사관은 지난 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가운데 3백97억원이 원인불명으로 증발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 감사관의 주장에 근거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증발한 돈이 21억원이 아니라 3백97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평민당에 따르면 합수부에서 계엄사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2백17억원이 없어졌으며, 다시 계엄사가 재무부에 돈을 넘기는 과정에서 1백80억원이 사라져 모두 3백97억원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백6억원은 부정축재자들에게 반환했고, 1백70억원은 재산평가액 차이라고 해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21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원의 해명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반환'했다

고 주장하는 2백6억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되돌려주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평가액 차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재산을 평가해서 1백70억원의 차이가 났는지 자세한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문육 감사관이나 평민당의 주장이 사실이고 감사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다. 만일 합수부나 계엄사가 80년 당시 부정축재 환수금을 단 한푼이라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유용했다면 '6공'정부는 부정축재자들보다 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비리를 '6공'정부가 덮어두려 든다면 6공의 도덕성과 정통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국회는 당연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문육 감사관은 지난 7일 평민당과 민주당(가칭)과 국민연합이 주최한 '석방촉구대회'에서 '용감한 공무원상'을 받았다. 정부는 그를 기우고 야당과 재야는 그에게 상을 주며 많은 국민이 그의 수상을 축하하는 이 괴리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이며 한계이다.

한겨레 90.6.9

"부정축재 환수금 3백97억 증발"

평민 주장 이 감사관 진술바탕 조사 결과

평민당 이문육 감사관 사건 조사대책위(위원장 홍영기 의원)는 7일 지난 80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 가운데 3백97억원이 원인불명으로 증발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책위는 지난 5월31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감사관을 접견, '이같은 진술을 듣고 모처에서 입수한 '합수본부 발표액과 정부 인수액 차액 내역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알려졌던 차액 21억원

보다 훨씬 많은 3백97억원이 증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평민당 확대간부회의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2면>

평민당은 또 감사원이 지난 89년 2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포기하고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겼던 점을 중시, 감사원장 직무유기 부분을 집중추궁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80년 합수본부가 발표한 현납 재산이 1천1백33억원이었으나 계엄사에서 인수한 금

액은 9백16억원으로 집계돼 2백17억원이 증발됐으며, 계엄사가 재무부 등에 인계한 액수는 7백36억원으로 이 과정에서 또 1백80억원이 증발됐다고 밝혔다.

평민당은 이에 따라 당시 합수본부장 전두환, 계엄사령관 이희성씨가 이 돈을 횡령했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준 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자당 단독의 국회 법사위 간담회에서 합수본부→계엄사 인계과정에서 11억원, 계엄사→재무부·문공부 인계과정에서 10억

동아 6.8